

한-영 FTA와 한-EU FTA의 법적 비교와 전망*

김 봉 철**

〈국문초록〉

브렉시트는 EU와 영국의 사회, 그리고 양측의 법체제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EU와 영국은 브렉시트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국제법과 국내법을 마련하고 있다. 탈퇴협정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영국의 국내법은 법체제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장치들이다. 한편 브렉시트는 EU 내부의 문제만은 아니며, 국제사회와 제3국에도 영향을 준다. 한국은 이미 브렉시트에 의한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는 노력을 해왔으며, 적절한 시기에 한-영 FTA를 체결하여 충격에 대비하였다. 한-영 FTA의 체결 목적이 브렉시트 상황에서 한국과 영국의 무역에 한-EU FTA에 의한 기존 특혜제공을 유지하는 것이지만, 이미 한-영 FTA에는 기존 한-EU FTA의 기준과는 차이를 보이는 면도 있다. 따라서 향후 양국의 협상과 필요에 의하여 한-영 FTA에 새로운 규율기준이 출현할 가능성도 있으며, 미래의 한-영 FTA는 한-EU FTA와 상당히 달라진 모습을 보일 것이다. 한-영 FTA 이외에도 한국과 영국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고 규율하는 다른 국제법들도 변화할 것이다. 양국관계에 적용되는 규범의 변화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와 예상도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변화에 적절하고 신속하게 반응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양국에 필요하다.

주제어: 브렉시트, 한-영 FTA, 한-EU FTA, 양자조약, FTA의 법적기반성

* 이 연구는 2020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부교수(bong625@hufs.ac.kr)

차 례

I. 서론: 브렉시트에서 출발한 한-영 FTA 논의	III. 한-영 FTA와 한-EU FTA의 구 범비교 및 향후 과제
II. 영국의 EU 탈퇴와 한-영 FTA 체결	1. 한-영 FTA 협정문의 구조
1. 브렉시트	2. 한-영 FTA와 한-EU FTA 협정문의 비교, 그리고 양 협정의 관련성
2. 브렉시트 현상으로 인한 법적 과제	3. 새로운 법적 대응의 필요성
3. 한-영 무역관계에 관한 양자간 FTA의 체결	IV. 결론: 새로운 한-영 국제법 체계를 위한 변화

I. 서론: 브렉시트에서 출발한 한-영 FTA 논의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은 국제무역에 경제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기 때문에, 한국의 통상법제는 그동안 국제사회의 변동에 반응하며 긍정적인 무역환경을 조성하려는 정책에 법적 근거를 제공해왔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은 2000년대 이후 무역활성화를 위한 한국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자리하였으며,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이 아시아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이었던 한-EU FTA는 양측의 긴밀한 협력을 위한 법적기반(Legal Infrastructure)으로 활용되었다.¹⁾

미국과 중국 등 경제대국들과의 FTA 협상이 비교적 어렵게 진행되었던 상황에서, 2011년에 발효된 한-EU FTA는 당시 상당한 의미가 있었다.²⁾ 그러나 영국과 EU 사이의 탈퇴협정이 2020년 2월 1일부터 발효되면서, 영국과 EU가 여러 측면에서 새로운 과제를 가지게 되었고 한-EU FTA도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이 통제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변수가 아니므로, 융통성을 가지며 대응하는 국내 통상법제의 기민함이 필요하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브렉시트 현상에 관한 평가와 한-영 FTA 준비에 대

1) 김봉철, 「한-EU FTA 발효와 법적 과제」, 『유럽연구』, 제31권 제3호 (2013), 2-3쪽.

2) 한-EU FTA는 이후 EU-일본 FTA 체결 등에도 영향을 주었다.

방향을 제안하는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브렉시트와 한-영 FTA로 이어지는 일련의 변화에 대한 법적 조망과 국내법의 대응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는 아직 다양하게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 글의 기본적인 목적은 EU에서 탈퇴하는 영국과 새로운 국제관계의 규범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한국 사이에 놓인 법적 과제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의 FTA가 무역과 경제협력의 확대라는 전통적인 기능에 더하여 비경제분야에서도 활용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한-영 FTA의 확장된 활용가능성도 고민할 필요도 있다.

이 연구는 한국이 브렉시트라는 외부적 변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점을 국내의 통상법 분야에서 파악하면서, 한-EU FTA와 같은 기존의 규범 체계에 한-영 FTA와 같은 새로운 대응책으로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는지 관찰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브렉시트에 관한 EU법 차원 법적 절차와 관련 문제, 나아가 한-EU FTA와 한-영 FTA를 직접 비교하여 향후 국내법의 대응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영국의 EU 탈퇴와 한-영 FTA 체결

1. 브렉시트

‘영국이 EU에서 탈퇴한다’는 ‘Britain+Exit’의 의미를 가진 ‘브렉시트’(Brexit)가 수년 동안의 논란 끝에 2020년부터 현실이 되었다. 2013년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국민투표를 통하여 EU 탈퇴 여부를 묻겠다고 약속한 것에서 비롯된 이 논의³⁾는, 보수당이 2015년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실천되었다.⁴⁾ 국민투표의 결과는 탈퇴를 지지하는 의견이 반대하는 의견보다 약간의 차이로 앞섰는데,⁵⁾ 영국사회에서 탈퇴의사를 표시한 측과 탈퇴를 반대하는

3) Rudolf G. Adam, *Brexit: Causes and Consequences* (Springer, 2019). p.66.

4) 황태희, 「영국의 EU탈퇴(Brexit)에 따른 EU 및 영국 경쟁법 비교 연구」, 『비교사법』, 제26권 제1호 (2016), 455쪽.

5) Denis MacShane, *Brexit: How Britain Left Europe* (I.B.Tauris, 2016). p.15.

측이 노년층과 청년층, 그리고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로 구분되어 영국사회의 내부적인 충격이 적지 않았다.⁶⁾

브렉시트에 관한 논란은 국제사회에도 다양한 영향을 주고 있다. 실제로 국민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전 세계의 주요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렸다. EU 정상들이 영국의 탈퇴를 억제하려고 합의안을 도출했을 때에도 영국 파운드(Pound)의 하락과 금융시장이 불안정하였다.⁷⁾ EU 내부적인 문제들과는 별도로, 한국을 포함한 제3국에 대한 영향도 다양하게 관찰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많은 국가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연쇄적인 영향들과, 그리고 그 영향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안이다.

브렉시트 논의는 EU 회원국의 탈퇴에 관한 절차적 문제들도 낳았다. EU 회원국의 탈퇴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EU조약(Treaty on the European Union: TEU) 제50조⁸⁾에 의하면, 탈퇴를 원하는 회원국은 그 의사를 유럽이사

-
- 6) 김명용, 「영국의 브렉시트 후 EU에 대한 관계 전망과 한국에의 시사점」, 『유럽헌법연구』, 제32호 (2020), 31-32쪽.
 7) 김권식·김윤경·김위대, 「브렉시트(Brexit) 논란의 배경 및 경제적 영향 점검」, 『국제금융』, 2016-4호 (2016), 40쪽.
 8) TEU 제50조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1. Any Member State may decide to withdraw from the Union in accordance with its own constitutional requirements.
2. A Member State which decides to withdraw shall notify the European Council of its intention. In the light of the guidelines provided by the European Council, the Union shall negotiate and conclude an agreement with that State, setting out the arrangements for its withdrawal, taking account of the framework for its future relationship with the Union. That agreement shall be negotia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18(3)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It shall be concluded on behalf of the Union by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acting by a qualified majority, after obtaining the consent of the European Parliament.
3. The Treaties shall cease to apply to the State in question from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withdrawal agreement or, failing that, two years after the notific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2, unless the European Council, in agreement with the Member State concerned, unanimously decides to extend this period.
4.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s 2 and 3, the member of the European Council or of the Council representing the withdrawing Member State shall not participate in the discussions of the European Council or Council or in decisions concerning it. A qualified majority shall be defin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38(3)(b) of the Treaty

회(European Council)에 통보하고 EU 및 회원국들과 탈퇴 이후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한다. 이 협상의 결과는 해당 국가의 의회와 유럽의 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⁹⁾ 원래 TEU 제50조의 탈퇴조항은 회원국이 활용할 것이라는 예상없이 EU의 통합성을 최대한으로 확장하기 위한 유럽헌법설립조약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도입되었다.¹⁰⁾ 따라서 규정은 구체적인 협상개시의 시점을 명시하지 않았고, 협상연장 기간을 설정하는 측면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¹¹⁾

국민투표로 탈퇴의사가 명확해진 영국은 이 TEU 제50조에 근거하여 2017년 3월 EU측에 공식적인 통보를 하였다.¹²⁾ EU에 탈퇴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한 국가는 영국이 처음이었으며,¹³⁾ 이어서 탈퇴협상이 진행되었으나 구체적인 협상은 지지부진하였다. 탈퇴의사의 통보 후 2년 이내에 양측이 탈퇴조건을 결정하는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EU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협상기간을 연장하지도 못하면, 아무런 조건없이 기존 EU법이 영국에 적용되지 않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No-deal Brexit)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2019년에는 양측이 협상기간을 연장하면서 결론을 지었고, 결국 탈퇴협정(Agreement on the withdrawal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from the European Union and the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을 체결하였다. 마지막으로 2020년 1월 영국과 EU의 의회가 탈퇴협정의 내용을 비준하면서 공식적인 탈퇴절차가 마무리되었으며, 2020년 2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5. If a State which has withdrawn from the Union asks to rejoin, its request shall be subject to the procedure referred to in Article 49.

- 9) 이주윤, 「EU조약과 영국법상 브렉시트의 제 문제에 대한 고찰」, 『국제법평론』, 제46호 (2017), 115-117쪽.
- 10) 김승민,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절차에 관한 법적 고찰」, 『국제법학회논총』, 제62권 제1호 (2017), 14쪽.
- 11) 김봉철, 「영국의 EU탈퇴(Brexit) 관련 법적 과제 및 전망」, 『강원법학』, 제50권 (2017), 132-133쪽.
- 12) Federico Fabbrini, “Introduction,” Federico Fabbrini ed., *The Law & Politics of Brexit*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p.7.
- 13) Christopher Hooton and Jon Stone, “Brexit: Article 50 Was Never Actually Meant to Be Used, Says Its Author,” *The Independent*, July 26, 2016.

월 1일부터 탈퇴협정이 발효되어 영국은 이제 공식적으로 EU의 회원국 위치에서 벗어났다.¹⁴⁾

탈퇴협정에 따라서, 영국은 이제 EU에서 제3국이 되었으므로 대표자로 나서지 못하며 의사결정 과정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다만 EU법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고 급격한 변화에 대한 양측의 충격과 혼란을 막기 위하여, 영국과 EU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행기간(경과기간 또는 과도기간: Transition period)을 탈퇴협정에 마련하여 당분간 영국에 EU법이 계속 적용되도록 하였다. 이행기간은 1-2년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연장할 수도 있었으나, 양측이 2020년 7월 1일 이전에 다시 이행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초 설정된 최종일에 종료된다.

2. 브렉시트 현상으로 인한 법적 과제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Uncertainty)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의 변화를 받아들이야 하며, 이에 따라서 다양한 과제가 출현한다.¹⁵⁾ 이 문제에 관하여 관심이 필요한 주요한 국제법의 법원(法源, Source of Law)은 영국과 EU 사이에 체결한 탈퇴협정이다. 이 조약은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조건을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탈퇴 후에도 진행될 EU와 영국의 관계를 설정하는 협상에 관한 정치적 선언(Political Declaration)과 아일랜드와 영국의 북아일랜드 지역에 관한 국경문제 관련 의정서(Protocol)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영국은 2018년 브렉시트 관련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EU 탈퇴법(European Union (Withdrawal) Act 2018)을 국내법으로 제정하여, EU법의 영국 내 효력이 사라지면서 나타나는 혼란에 대응하였고, 기존 EU법 및 파생 법령을 영국의 국내법으로 바꾸는 작업을 준비하였다.¹⁶⁾ 또한 탈퇴협정이 채

14) 조동희·윤형준, 「브렉시트 개시: 의미와 쟁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20권 제2호 (2020), 1쪽.

15) 'EU법 우위의 원칙' 또는 'EU법 직접효력의 원칙'과 같은 EU법 차원의 원칙을 영국 내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한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난다. 김용훈,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유럽연합법질서의 국내법적 위상」, 『유럽헌법연구』, 제24호 (2017), 2쪽.

결된 이후 영국은 EU 탈퇴협정이행법(European Union (Withdrawal Agreement) Act 2020)을 제정하면서, 탈퇴협정을 국내법으로 전환하여 비준하였다. 이 법은 영국정부의 역할과 관련하여 기존 EU 탈퇴법을 보완하는 기능도 한다.

브렉시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법과 국내법의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하더라도, 영국법의 전통적인 정서와 EU법의 기반인 대륙법(Continental Law) 정서가 다르다는 점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다. EU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영국사회의 판례들이 전통적인 영국법 기준의 회귀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¹⁷⁾ 판례를 중시하는 잉글랜드의 영미법(Anglo-American Law) 전통에 비추어보면, 과거 영국에 없었던 사건에 대하여 EU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판결을 선례로 취급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발생한다.

브렉시트가 경제적으로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인가에 관하여는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 영국이 EU 회원국으로서 단일시장 아래에서 상품과 서비스, 자본과 노동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상황에 비해서 경제활동의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이 금융분야에서 EU 동일인 원칙(EU single passport rule)¹⁸⁾을 적용받지 못하면서 금융선도국의 명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¹⁹⁾ 따라서 영국은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EU와 FTA (또는 더 발전된 단계라면 관세동맹 수준) 형태의 무역과 경제협력에 관한 국제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²⁰⁾

16) 이 법은 EU와의 협상에서 영국정부의 역할을 규정하기도 하였다.

17) 천윤진, 「규범적 관점에서 본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강원법학』, 제58권(2019), 773쪽.

18) 금융분야에서 ‘EU 동일인 원칙(EU single passport rule)’은 어느 EU 회원국으로부터 금융기관이 설립인가를 받아 다른 회원국에서 지점을 개설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를 ‘EU 단일 패스포트’ 또는 ‘패스포팅(Passporting) 권한’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윤석, 「브렉시트의 의미와 우리의 대응」, 『주간금융브리프』, 제25호(2016), 4-5쪽.

19) 영국이 EU를 탈퇴하면서 EU와 자유무역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여 무역에 장애가 발생한다면, 2030년까지 GDP의 2.2% 정도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영국은 이러한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0) 이와 관련하여, 한-EU FTA의 여러 요소들이 영-EU FTA 준비과정에서 참고자

브렉시트는 영국과 EU의 관계정립에 관한 문제들 이외에도, 제3국과의 관계에서도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법적 장치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과제를 낳는다.²¹⁾ 이러한 상황은 WTO와 같은 다자주의 국제통상법 체계에서 풀어야 할 과제이지만, 개별국가들과도 EU가 배제된 직접적인 무역관계 설정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²²⁾ 예를 들어, 영국은 EU의 회원국이 아닌 독자적인 한국의 무역상대국으로서 자국의 이익을 주장하면서 한국과의 양자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영국이 EU법의 틀에서 벗어나는 상황은 한-영 관계에 관한 국제법, 그리고 양국의 국내법에도 상당한 변화가능성을 줄 것이다.

3. 한-영 무역관계에 관한 양자간 FTA의 체결

브렉시트는 통상환경의 변화를 가져오며, 영국은 EU회원국이 아닌 제3국과의 대외무역에서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한국과 영국 사이의 무역은 이제 ‘한국-EU 회원국 무역’이 아니라, ‘한국-영국 무역’이라는 관계에 놓인 것이다. 브렉시트 논의가 지속되면서, 영국과 한국의 정부는 한-EU FTA를 기반으로 제공되었던 특혜를 지속하고 양국의 안정적인 무역환경을 유지하며 발전시키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²³⁾

한국 정부는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한-영간 통상관계의 연속성을

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mily Lydgate and Alan Winters, “Deep and not comprehensive? What the WTO rules permit for a UK-EU FTA,” *World Trade Review*, Vol.18 No.3 (2019), pp.472-474.

21) Ewa Sońta-Drażczkowska, “Brexit as a National Transformation Programme: Project Management Perspective,” A.M. Kowalski ed., *Brexit and the Consequences for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Palgrave Macmillan, 2018). p.54.

22) Peter Holmes, “Trade and regulation in relations with the EU and third countries after Brexit,” B. Vickers and S. Khorana, eds., *Navigating Uncertainty: Towards a Post-Brexit Trade and Development Agenda* (The Commonwealth, 2018), p.20.

23) Roberto Soprano, “Brexit and the EU-UK Free Trade Agreement: Do’s and Don’ts When Drafting Rules of Origin,”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Law and Policy*, Vol.18 No.2 (2019), pp. 96-97.

확보하기 위하여 한-영 FTA를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였고, 이를 위하여 한-영 FTA 체결에 관한 연구와 논의를 진행하였다. 2018년에는 통상절차법²⁴⁾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이에 관한 국회보고도 이루어졌다. 한편 브렉시트 결정 이후 2016년 12월부터는 양국 정부가 무역작업반을 설치하여 한-영 FTA 추진을 위한 실무적 협의를 수행하였다.

2019년 1월 런던에서 개최된 한-영 무역작업반 회의에서는 한-영간 통상관계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영 FTA를 빠르게 준비하는 방안을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협의하기에 이르렀다.²⁵⁾ 이후 신속한 협상과정을 거치면서, 양국 정부는 6월 서울에서 한-영 FTA 협상의 원칙적인 타결을 선언하였고, 8월 22일에 정식 서명하였다. 이후 한국 국회에서는 2019년 10월 28일 본회의를 통과하여 국내 비준절차가 완료되어 발효를 기다리고 있다.²⁶⁾

한-영 FTA는 브렉시트에 대비하여 한국 정부가 통상환경 위협을 선제적이고 성공적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평가된다. 한국에게는 EU 회원국 중에서 두 번째 규모의 무역상대국인 영국이 브렉시트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한-EU FTA가 제공하였던 특혜적인 통상환경을 한-영 FTA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연속하여 확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한국과 영국 정부는 노딜 브렉시트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임시조치(emergency bridge agreement) 성격의 한-영 FTA 추진에 합의하였고, 이를 빠르게 진행하였다.²⁷⁾

만약 노딜 브렉시트 상황이 현실화된다면, 한-EU FTA의 적용은 곧바로 중단되며 양국의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브렉시트의 방향이 불확실해지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²⁸⁾에

24) 통상절차법은 한-미 FTA의 재협상 당시 한국 정부가 국내대책으로 마련한 것으로, 정부가 FTA와 같은 중요한 통상조약체결계획이나 국내산업 또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하여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5)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2019. 1. 29.

26)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2019. 10. 28.

27) 손수석, 「브렉시트가 한국의 대영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경제연구』, 제37권 제4호 (2019), 118쪽.

28) 당시 한국 정부는 노딜 브렉시트, 브렉시트 이행기간 확보, 브렉시트 시한 추가연장 등 다양한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별 대응전략을 수립하였다.

대비하여 종합적이고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는데, 특히 영국과의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서 아시아 최초로 한-영 FTA 협상을 마무리하였다. 결국 양측의 빠른 대응으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기 전에 양국 통상관계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²⁹⁾

양국은 이미 FTA의 국내법화를 위한 기준을 완료하여 즉시 적용되더라도 특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영국과 EU의 탈퇴협정에 따라서 이행기간 동안에는 영국이 EU와 관세동맹 및 단일시장 체계에 잔류하므로, 이행기간 종료시점인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영 무역활동에는 한-EU FTA가 적용된다. 2020년 7월 1일 이전에는 영국과 EU가 합의하여 다시 이행기간을 연장할 가능성도 있었으나,³⁰⁾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영 FTA는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Ⅲ. 한-영 FTA와 한-EU FTA의 규범비교 및 향후 과제

1. 한-영 FTA 협정문의 구조

한-영 FTA 협정문은 서문, 15개의 장으로 구성된 본문, 그리고 부록과 의정서를 포함하고 있다. 서문에서는 자유로운 무역이나 투자의 증진과 같은 이 조약의 체결 배경을 설명하면서, WTO 체계와의 조화 등 국제사회의 다자간 규범체계와의 연결고리를 설정하였다. 아울러 서문에서는 협정을 구성하는 몇 가지 작동원리를 선언하였다. 예를 들어, 지속가능성과 투명성, 노동과 환경 문제에 관한 관심 등이 한-영 FTA의 작동원리로서, 향후 협정의 해석과 재협상 단계에서 의제로 활용될 수 있다. 한-영 FTA 본문의 각 장 구성은 다음과 같다.

29)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2019. 6. 10.

30) 반면에 탈퇴협정을 비준하기 위해 마련된 영국 국내법인 EU 탈퇴협정이행법 제33조는 이행기간 연장을 금지하였다.

[표 1] 한-영 FTA 협정문의 본문 구성

제1장 목적 및 일반정의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부속서 2-가 관세철폐
부록 2-가-1 대한민국 / 부록 2-가-2 영국
부속서 2-나 전자제품
부록 2-나-1 / 부록 2-나-2 / 부록 2-나-3 / 부록 2-나-4
부속서 2-다 자동차 및 부품
부록 2-다-1 / 부록 2-다-2 / 부록 2-다-3
부속서 2-라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부속서 2-마 화학물질
제3장 무역구제
부속서 3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제4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부속서 4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6장 관세 및 무역원활화
제7장 서비스 무역·설립 및 전자상거래
부속서 7-가 약속 목록
부속서 7-가-1 영국 제7.7조에 합치하는 약속 목록(국경 간 서비스 공급)
부속서 7-가-2 영국 제7.13조와 합치하는 약속 목록(설립)
부속서 7-가-3 영국 제7.18조 및 제7.19조에 합치하는 유보 목록
(핵심인력과 대졸연수생 및 상용서비스판매자)
부속서 7-가-4 대한민국 제7.7조, 제7.13조, 제7.18조 및 제7.19조에 합치하는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부속서 7-나 최혜국대우 면제
부속서 7-다 최혜국대우 면제 목록
부속서 7-라 금융 서비스에 관한 추가적 약속
대한민국의 우편개혁계획에 관한 양해
통신서비스에 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해
용도 지역 지구제·도시 계획 및 환경 보호와 관련된 규제에 관한 양해
제7.5조 제2항 가호 각주 5에 관한 양해
제8장 지급 및 자본이동
제9장 정부조달
부속서 9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협약
제10장 지식재산
부속서 10-가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
부속서 10-나 포도주, 방향포도주 및 증류주에 대한 지리적 표시
지식재산 장 제10.30조의 각주 14에 관한 양해
제11장 경쟁
제12장 투명성
제13장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부속서 13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협력

제14장 분쟁해결

부속서 14-가 비관세조치에 대한 중개 매커니즘

부속서 14-나 중재절차 규칙

부속서 14-다 중재패널 구성원과 중개인에 대한 행동규범

제15장 제도·일반 및 최종규정

제1장은 3개의 조항을 통하여 협정의 목적과 전반적인 정의규정을 두었다. 제2장과 제3장은 상품무역에 관한 규정과 이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협정문 각 장에는 부속서, 부록, 양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제2장 상품무역에 관한 부속서와 부록은 이 협정문 전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품목별 관세수준에 관한 목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비스 무역과 전자상거래에 관한 제7장의 내용도 그러하다. 제4장부터 제6장까지는 기술장벽,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관세 및 무역원활화에 관한 규정들이다.

제8장은 무역활동에 필수적인 지급과 자본의 이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9장은 정부조달에 관한 양국 사이의 합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부속서 9에는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제10장은 지식재산에 관한 규정이다. 제11장부터 제13장까지는 각각 경쟁, 투명성, 무역에 관한 지속가능성을 규정하였다. 이밖에 제14장은 분쟁해결에 관한 중재 등의 규정, 제15장은 무역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전문분야에 관한 작업반 설치, 예외와 발효조건에 관한 최종규정들이 명시되어 있다.

한·영 FTA는 본문 이외에도 협정의 원활한 활용과 효력의 확대를 위하여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 세관 분야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가 협정문의 일부로 포함되었다. 또한 양국은 한·영 FTA 협정을 체결하면서 이행기간 확보시 추가협정의 서한, 양자협력 강화 서한, 고속철 정부조달 양허개선 서한에도 추가로 합의하여 향후 양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³¹⁾

31) 이 서한에 따르면, 영국이 EU와 탈퇴에 합의(딜 브렉시트)하여 2020년 말까지 이행기간이 확보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양국은 한-EU FTA 플러스 수준으로

2. 한-영 FTA와 한-EU FTA 협정문의 비교, 그리고 양 협정의 관련성

한-EU FTA가 전체 15개의 장으로 구성된 것을 고려하면, 한-영 FTA 협정문의 구성은 대체로 한-EU FTA의 협정문과 유사하다. 양 FTA의 각 장 순서와 명칭도 흡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영 FTA의 내용이 한-EU FTA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한-영 FTA 조항들은 한국과 영국의 무역활동에 있어서 기존의 한-EU FTA의 기준과 유사한 수준의 무역환경을 제공하려는 목적이 강하고, 나아가 한-EU FTA의 기준과 연동하여 규율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한-영 FTA 제2장의 합의로 양국은 상품무역에 관한 관세 철폐를 유지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한-EU FTA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즉, 원칙적으로 한-영 FTA에 한-EU FTA의 양허표를 적용하며, 한-영 FTA의 관세인하 시작시기를 한-EU FTA 발효시점인 2011년 7월 1일로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주요 수출품을 영국시장에 무관세 혜택으로 수출하기 위한 기준들을 한-EU FTA와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다.³²⁾

한-영 FTA는 한-EU FTA의 일반적인 특혜제공의 효력이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한-영 FTA는 상품무역에 관한 제2장에서 제2.15조의2(경과규정)를 통하여, 이 협정이 발효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국에 대한 한-EU FTA의 적용이 중단되는 경우에 한-영 FTA의 특혜관세대우를 중단하지 않고 부여하거나 소급하여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었다. 이를 통하여 브렉시트가 한국과 영국 사이의 무

한-영 FTA를 개정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국은 경제 성장, 고용창출 및 혁신을 위해 협력 잠재력이 높은 5대 분야(산업혁신기술, 중소기업, 에너지, 농업, 자동차)에서도 양자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영국은 고속철분야의 양허 검토를 서명이후 신속하게 개시하고 향후 FTA 협상과정에서도 적극 고려하기로 합의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2019. 8. 23.

32) 현재 한국의 영국 수출에서 전체 상품들의 99.6%를 무관세로 취급하고 있는데, 한-영 FTA를 체결하지 못하였다면, 평균 4.73% 수출 관세 부과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역에 주는 충격을 완화하려는 목적이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평가할 수 있다.

EU산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도 3년 한시적으로 역내산 제품으로 인정하였다(한-영 FTA 원산지의정서 제3조). 이러한 원산지에 관한 양국의 합의는, EU 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존 생산 및 공급망의 조정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한 것이다. 또한 3년 한시적으로 EU를 경유하여도 직접 운송으로 인정하여, 한국 기업들이 EU 물류기지를 경유하여 영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도 한-영 FTA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한-영 FTA 원산지의정서 제13조). 이러한 한-영 FTA의 합의들 역시 기존 한-EU FTA로 조성된 무역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융통성 있는 규율을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한-영 FTA 중에서 이전의 한-EU FTA의 기준과 차이가 있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한-EU FTA에서 설정한 원칙에 대한 예외를 한-영 FTA에서 설정한다든지, 한국과 영국의 양국 사이의 관계와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품목을 달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농업분야의 긴급수입제한조치는 국내 농업의 민감성 보호를 위해 EU 보다 낮은 수준에서 발동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추었다.³³⁾ 상품의 지리적 표시에 관하여, 양국은 기존 한-EU FTA에서 인정하던 지리적 표시를 그대로 인정하였으나, 영국은 주류 2개 품목, 한국은 농산물과 주류 64개 품목을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합의하였다.³⁴⁾ EU의 기준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영국의 입장과 한국과의 무역특성을 반영한 결과이다.

한-영 FTA가 한-EU FTA와 비슷한 규정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영 FTA와 한-EU FTA 사이에 명확한 차이를 발견할 수도 있다.³⁵⁾ 한-EU FTA 체결 당시에는 과제로 남아있었던 사항들이 한-영 FTA에는 양국이 10

33)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설탕, 인삼, 맥아·맥주맥, 발효주정, 변성전분, 감자전분 등 9개 품목 국내 수요에 비해 생산이 부족한 맥아와 보조 사료에 한해서는 최근 3년간 통계를 감안하여 관세율할당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34) 여기에 해당하는 주요 대상은 한국의 보성녹차, 순창전통고추장, 이천쌀, 고려홍삼, 고창복분자, 진도홍주 등 64개 품목이며, 영국의 스카치위스키, 아이리시 위스키 등 2개 품목이다.

35) Priort Ostaszewski, "Brexit and Britain's Relation with South Korea," A. M. Kowalski, ed., *Brexit and the Consequences for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Palgrave Macmillan, 2018), p.211.

년 사이의 상황변화를 확인하여 완결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한-EU FTA 체결 당시에 한국의 우편서비스를 개혁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는 과제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한-영 FTA는 ‘대한민국의 우편 개혁 계획에 관한 양해’를 두어 한-EU FTA 협정문에 언급된 우편개혁계획 상의 모든 조치들을 한국이 완료하였음을 양국이 인정한다고 명시하였다.

3. 새로운 법적 대응의 필요성

브렉시트로 인하여 EU와 체결하였던 조약들이 영국에 적용되지 않을 것이므로, 한-영 협력관계가 전반적으로 국제법 측면에서 새로운 상황에 놓인다. 기존의 규범들을 대체할 새로운 한-영 양자간 조약들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무역 및 경제관계를 규율하던 한-EU FTA가 한-영 FTA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한-EU FTA가 법적기반성을 확장하여 무역이나 경제협력에 연계된 안보와 같은 비경제분야에 대한 활용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면,³⁶⁾ 한-영 FTA에서도 그러한 기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한국과 영국 사이의 국제법 법원(法源)체계에 대한 새로운 안목이 필요하다. 2010년 한-EU FTA와 함께 양측에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설정하면서 다양한 협력의 법적기반을 제공했던 한-EU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FA)처럼,³⁷⁾ 이를 대체할 새로운 양자간 협정을 체결하거나 기존 협정의 활용을 위한 기능의 재발견이 요구된다. 현재로서는 기존 한-EU 기본협정의 기능을 완전히 대체하며 한-영 협력관계 일반을 아우르는 한-영 사이의 양자간 협정이 없으므로, 한국과 영국 사이에 이미 체결되어 있었던 기존 양자간 협정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EU의 군사작전 등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EU 위기관리

36) 김봉철, 「한국 FTA의 진화와 규범적 역할의 재발견」, 『무역상무연구』, 제 79권 (2018), 174-178쪽.

37) James Harrison, “An Introduction to the Legal Framework for EU-Korea Relations,” J. Harrison, ed., *The European Union and South Korea: The Legal Framework for Strengthening Trade, Economic and Political Relations*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13), p.3.

참여협정(Framework Participation Agreement aimed at facilitating Korea's future participation in EU Common Security and Defence Policy (CSDP) operations)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영국은 앞으로 EU 회원국들과의 관계설정을 통하여 EU의 위기관리 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협력을 지속할 것이다. 동시에 영국은 UN과 같은 국제무대에서 안보에 관하여 여전히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군사강국이고, 한국전쟁에도 참여하는 등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역사적으로도 깊게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영국은 한-EU 위기관리 참여협정의 당사국에서 배제되므로, EU의 위기관리 활동에 한국과 영국이 함께 참여하거나 양국 사이에 개별적인 협력에 필요한 새로운 국제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한-EU 차원의 조약들과는 별도로, 한국과 EU 회원국은 개별적인 양자조약을 체결하여 협력하기도 한다. 이러한 양자조약으로 한-EU 차원의 협정이 규율하지 못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논제까지 규율 분야를 확장할 수 있는 것이다. 양자조약은 EU 회원국의 개성을 반영하여 한국과 협상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각국의 관심분야와 민감성 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³⁸⁾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FTA를 제외한 한국과 영국 사이의 양자협정 체결은 앞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EU 회원국이었던 영국은 한국과 애초 이러한 개별적인 양자협정을 통한 협력을 진행하였고, 한-EU FTA와 같은 집단적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양자협정은 여전히 활용되었다. 또한 한-영 FTA의 규정은 한국과 영국 사이의 투자문제에 있어서 이미 체결된 한-영 양자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보다 자세하지 않고,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은 한-영 BIT의 규율에 양보하였다.

이제 한국 기업은 영국시장에서 영업활동을 하면서 EU법과 기준이 아닌 영국 국내법과 기준을 먼저 살펴야 하며, 한국과 영국 그리고 영국과 EU 사이의 자연인 이동에 관한 법적근거 등의 변화를 이해해야 한다. 이런 부분은 이전보다 더 많은 비용부담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민감하지 않

38) Bongchul Kim, "Development of the Law for the Relation between Korea and Eastern Europe: The Legal Infrastructure on the Korea-Visegrád Relationship," B. Kim, T. Wierzbowski, H. Lee, and E. Motylinska, eds., *Selected Issues in the EU-Korea Relations* (Hufs Knowledge Contents and Press, 2018), p.62.

는 사안에 관하여는 다양한 의견이 많은 EU보다는 영국과의 직접 협상으로 개방적이고 기민한 협력기반을 마련할 수도 있다는 긍정적 예상도 가능하다. 어느 분야에서는 영국법이 개방적이고 기존의 EU 기준보다 한국이 적응하기에 수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EU FTA와 한-영 FTA에 공통적으로 자리하는 무역과 지속가능한 개발(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에 관한 규정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역과 지속가능성에 관련된 의제들은 무역분야에서 환경, 노동, 인권, 공정무역, 개발협력 등 최근 국제사회에서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목표에 관련되어 있다.³⁹⁾ 따라서 향후 당사국들의 노력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협상 및 조정가능성이 있다. 한-영 무역과 지속가능성에 관련된 법분야의 노력은 한국과 영국이 서로 발전된 법분야를 분석하여 벤치마킹하거나 공유하는 법제협력(Legal Exchange)차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IV. 결론: 새로운 한-영 국제법 체계를 위한 변화

브렉시트 상황으로 인하여 EU와 영국 사이에는 탈퇴절차를 위한 국제법과 국내법이 마련되어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브렉시트는 EU와 영국 사회의 여러 면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EU법과 영국법이라는 규율기준이 변화하는 것처럼 상당한 사회적 충격이 예상된다. 양측은 탈퇴협정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내법의 보완을 통하여 법체계의 변화가 가져올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브렉시트 상황은 영국이나 EU 내부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되는 것이 아니

39) 한-EU FTA는 이전 FTA들이 일반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지속가능성’ 논제를 협정문 제13장에서 별도로 부각시키며 규정을 두었다: Gracia Marín Durán, “Innovations and Implications of the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Chapter in the EU-Korea Free Trade Agreement,” J. Harrison, ed., *The European Union and South Korea: The Legal Framework for Strengthening Trade, Economic and Political Relations*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13), pp.124-125.

며, 제3국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 특히 국가경제의 상당한 비율을 무역에 의존하는 한국의 경우에는, 브렉시트 현상과 같은 외부요인이 주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그러한 목적의 연구와 제안이 요구된다. 한국과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논의가 시작되었던 시기부터, 기존 한-EU FTA 체계를 대체할 한-영 FTA 체결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하여, 실제 브렉시트 상황의 발생에 적절히 대응하는 준비를 하였다.

한-영 FTA의 체결 목적이 브렉시트에 따른 변화에 적응하고 기존의 특혜 제공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것이었다면, 그러한 법적기반을 마련하여 일차적인 목적은 달성한 셈이다. 그러나 이미 한-영 FTA에는 한-EU FTA의 기준과는 차이를 보이는 부분도 있으며, 향후 양국의 협상과 필요에 의하여 새로운 규율기준이 출현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한-영 FTA는 무역장벽의 제거를 넘어서는 포괄적인 경제무역협정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⁴⁰⁾ 양국은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기 위한 절차들도 합의하였다.

장기적으로 보면, 미래의 한-영 FTA는 한-영 무역의 변화와 양국의 특성에 따라서 비슷한 출발점에 있었던 한-EU FTA와 상당히 달라진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여러 면에서 한국과 영국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고 규율하는 다른 국제법들도 그 내용과 기능이 변화할 것이며, 새로운 조약들의 체결가능성도 충분하다. 이와 같이 양국관계에 적용되는 규범의 변화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와 예상도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변화에 적절하고 신속하게 반응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한-영 양국에 요구된다. 이를 위한 법분야의 연구와 대안제시가 필요하다.

40) 정재우·홍재성, 「브렉시트(Brexit)에 따른 한-영 FTA 체결의 주요 논점과 한국의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연구』, 제12권 제5호 (2016), 693-694쪽.

참고문헌

- 김권식·김윤경·김위대, 「브렉시트(Brexit) 논란의 배경 및 경제적 영향 점검」, 『국제금융』, 2016-4호 (2016).
- 김명용, 「영국의 브렉시트 후 EU에 대한 관계 전망과 한국에의 시사점」, 『유럽헌법연구』, 제32호 (2020).
- 김봉철, 「한-EU FTA 발효와 법적 과제」, 『유럽연구』, 제31권 제3호 (2013).
- 김봉철, 「영국의 EU탈퇴(Brexit) 관련 법적 과제 및 전망」, 『강원법학』, 제50권 (2017).
- 김봉철, 「한국 FTA의 진화와 규범적 역할의 재발견」, 『무역상무연구』, 제79권 (2018).
- 김승민,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절차에 관한 법적 고찰」, 『국제법학회논총』, 제62권 제1호 (2017).
- 김용훈,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유럽연합법질서의 국내법적 위상」, 『유럽헌법연구』, 제24호 (2017).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2019. 1. 29.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2019. 6. 10.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2019. 8. 23.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2019. 10. 28.
- 손수석, 「브렉시트가 한국의 대영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경제연구』, 제37권 제4호 (2019).
- 이윤석, 「브렉시트의 의미와 우리의 대응」, 『주간금융브리프』, 제25호 (2016).
- 이주운, 「EU조약과 영국법상 브렉시트의 제 문제에 대한 고찰」, 『국제법 평론』, 제46호 (2017).
- 조동희·윤형준, 「브렉시트 개시: 의미와 쟁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20권 제2호 (2020).
- 정재우·홍재성, 「브렉시트(Brexit)에 따른 한-영 FTA 체결의 주요 논점과 한

- 국의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연구』, 제12권 제5호 (2016).
- 천윤진, 「규범적 관점에서 본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강원법학』, 제58권 (2019).
- 황태희, 「영국의 EU탈퇴(Brexit)에 따른 EU 및 영국 경쟁법 비교 연구」, 『비교사법』, 제26권 제1호 (2016).
- Adam, Rudolf G., *Brexit: Causes and Consequences* (Springer, 2019).
- Durán, Gracia Marín, “Innovations and Implications of the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Chapter in the EU-Korea Free Trade Agreement,” J. Harrison, ed., *The European Union and South Korea: The Legal Framework for Strengthening Trade, Economic and Political Relations*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13).
- Fabbrini, Federico, “Introduction,” F. Fabbrini, ed., *The Law & Politics of Brexit*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 Harrison, James, “An Introduction to the Legal Framework for EU-Korea Relations,” J. Harrison, ed., *The European Union and South Korea: The Legal Framework for Strengthening Trade, Economic and Political Relations*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13).
- Holmes, Peter, “Trade and regulation in relations with the EU and third countries after Brexit,” B. Vickers and S. Khorana, eds., *Navigating Uncertainty: Towards a Post-Brexit Trade and Development Agenda* (The Commonwealth, 2018).
- Hooton, Christopher, and Jon Stone, “Brexit: Article 50 was never actually meant to be used, says its author,” *The Independent*, July 26, 2016.
- Kim, Bongchul, “Development of the Law for the Relation between Korea and Eastern Europe: The Legal Infrastructure on the Korea-Visegrád Relationship,” B. Kim, W. Tomasz, H. Lee, and E. Motylinska, eds., *Selected Issues in the EU-Korea Relations* (HUFS Knowledge Contents and Press, 2018).
- Lydgate, Emily, and Alan Winters, “Deep and not comprehensive? What the WTO rules permit for a UK-EU FTA,” *World Trade Review*, Vol.18 No.3 (2019).
- MacShane, Denis, *Brexit: How Britain Left Europe* (I.B.Tauris, 2016).

- Ostaszewski, Piotr, "Brexit and Britain's Relation with South Korea," A.M. Kowalski, ed., *Brexit and the Consequences for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Palgrave Macmillan, 2018).
- Sońta-Drażkowska, Ewa, "Brexit as a National Transformation Programme: Project Management Perspective," A.M. Kowalski, ed., *Brexit and the Consequences for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Palgrave Macmillan, 2018).
- Soprano, Roberto, "Brexit and the EU-UK Free Trade Agreement: Do's and Don'ts When Drafting Rules of Origin,"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Law and Policy*, Vol.18, No.2 (2019).

〈Abstract〉

Comparison and Prospect of the Korea-UK FTA and the Korea-EU FTA from the Legal Perspective

Bong-Chul KIM*

Brexit will bring great changes to EU and British society, and it will shock the legal systems of both sides. The withdrawal agreement and Britain's domestic law to implement it have set up devices to absorb the impact of the legal system. Brexit is not just a problem within the EU, it also affects third countries. Korea is making efforts to adapt quickly to changes caused by Brexit and prepared for shocks by signing the Korea-UK FTA at an appropriate time. Although the purpose of the Korea-UK FTA is to adapt to the Brexit phenomenon and maintain the existing preferential treatment based on the Korea-EU FTA, the Korea-UK FTA already has some differences from the existing standards of the Korea-EU FTA, an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new standards of discipline will emerge depending on future negotiations and needs of the two partner countries. The future Korea-UK FTA will be quite different from the Korea-EU FTA, and other international laws establishing and regulating relations between Korea and the UK will also change. There are negative assessments and predictions of changes in norms applied to bilateral relations, but ultimately, the two countries need an active attitude to respond appropriately and quickly to changes.

* Associate Professor, Division of International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bong625@hufs.ac.kr)

Keywords: Brexit, Korea-UK FTA, Korea-EU FTA, Bilateral Treaty, Function of Legal Infrastructure in FTAs

원고접수일: 2020. 07. 04.

심사마감일: 2020. 07. 08.

게재확정일: 2020. 07. 08.

